

—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7월 9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7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7월 16일

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【별표】의 일반직 의사의 의료 업무수당 30만원 인상
 - 전문의 : 월 609,000원 이하 → 909,000원 이하
 - 일반의 : 월 518,000원 이하 → 818,000원 이하
- 적용시기 : 2003. 7. 1부터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, 별표9의 2호
- 의료업무수당안 통보(경상북도 총무12151-11236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2003. 6. 14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시행토록 승인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